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다른 웹 정보와의 자유로운 연결을 전제로 한다. 하이퍼링크 기술은 사이버 공간에 있는 누구나 공개된 다른 웹 사이트와의 연결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보의 공유를 실현하고 있다. 하이퍼링크를 위해 웹 사이트 운영자들은 상호 협조할 필요가 없으며, 링크를 원하는 일방에 의해서 공개된 웹 정보라면 어떤 것이든 연결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하이퍼링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양한 링크의 모습에 따른 법적 책임의 차이에 관해 논의하며, 아울러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국내외 링크 관련 판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 손승우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연재순서	
7	디지털콘텐츠와 기술적 보호조치
8	BM 특허
9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10	P2P 분쟁-소리바다사건-
11	하이퍼링크의 법적 문제
12	SW 임차제도

인터넷 하이퍼링크 행위가 상표권 등을 침해하느냐는 질문에 네티즌은 단호하게 ‘아니오’ 라고 답하겠지만 링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자유로운 정보공유라는 순수성을 넘어 링크 기술을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타인의 노력과 투자에 무임승차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무단 링크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하이퍼링크의 문제는 다른 법적 이슈에 비해 새로운 것이며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불과 6~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하이퍼링크의 법적 책임은 대부분 저작권과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부정경쟁 행위·상표권 등과의 논의가 점차로 증대되고 있다.

링크와 저작권

링크(link)는 웹 페이지 내에 포함돼 있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말한다. 웹 운영자는(하이퍼) 링크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의 웹 문서와 다른 웹 문서 또는 이미지 등을 연결시킨다. 인터넷 웹 문서를 만들 때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HTML (Hyper Text Markup Language)에서 하이퍼링크 태그(Hyperlink Tag)를 사용해 만들어진 링크를 웹 페이지 상에서 마우스로 클릭하면 다른 웹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예를들면, 웹 페이지에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진 HTML의 구성을 보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로 돼있다.

링크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 즉, 다른 웹 사이트와의 단순 링크에서부터 직접 링크(deep links)·새 창 띄우기 링크·이미지 링크·상표 링크·프레임 링크·다운로

드 링크·동일 문서 내 링크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이뤄진다.

웹 기술은 기본적으로 링크를 위해서 두 웹 운영자간의 협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인터넷상에 공개된 웹 문서는 어떤 것이든 링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자가 다른 웹 사이트 운영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링크를 시킨 경우에 과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링크와 저작권 침해 여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웹 페이지에 있는 링크의 HTML 구성을 보면 연결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target page)의 URL, 타겟 웹 페이지 이름, 하이퍼링크 태그 등으로만 구성될 뿐이지 링크 행위 자체가 타겟 웹 사이트의 저작물 복제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링크는 단순히 자신의 웹 페이지에서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링크 서버에서는 타겟 웹 페이지의 어떠한 데이터도 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이퍼링크는 저작권법상의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링크는 저작권법상의 전송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전송이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9의 2호)을 말한다. 링크는 다른 웹 사이트의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링크를 위해서 다른 웹 페이지에 있는 로고·이미지 등을 복제해 사용할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만약 그 로고 등이 타인의 상표인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Shetland Times 사건(Shetland Times Ltd. vs Dr. Jonathan Wills and Zetnews Ltd., Scotland Court of Sessions, Edinburgh, October 24, 1996)

영국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저작권에 기초해 피고의 무단 링크 행위를 중단시키는 잠정적 금지명령

을 내렸다. 원고는 지역 및 국내·국제 뉴스를 제공하는 Shetland Times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Shetland News라 불리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피고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는 원고가 제공하는 각각의 신문 기사를 볼 수 있도록 링크된 수많은 헤드라인이 복제돼 있었다. 피고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가 헤드라인을 클릭하게 되면 당해 링크는 원고의 메인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원고 웹 페이지에 있는 해당 신문 기사를 연결해 보여줬다. 법원은 원고가 메인 웹 페이지에서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음을 확인했고, 피고의 이러한 직접 링크로 인해 그 광고 수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잠재적인 손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링크 행위를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직접 링크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영국 사례다. 단순 링크는 다른 웹 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옮겨지는데 반해, 직접 링크는 다른 웹 사이트의 초기화면이나 메인화면으로 연결하지 않고 홈페이지의 구성(map)상 하위에 있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직접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링크가 논란이 되는 것은 대부분의 웹 사이트들이 초기화면에 광고 배너를 게재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위 사례와 같이 헤드라인을 클릭하면 링크는 원고의 메인화면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개별 신문 기사 페이지로 이동해 그 기사를 보여줌으로써 원고가 얻어야 할 광고수익을 피고가 가로채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나 직접링크가 원저작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Ticketmaster vs Tickets.com 사건에서 법원은 직접링크 또한 일반 링크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에 대한 복제를 수반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링크에 의해 원저작자의 웹 페이지로 이동할 뿐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바 있다.

다만, Shetland Times 사안에서와 같이 직접 링크가 타인의 노력과 투자에 무임승차해 광고수익을 증가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정상조, 인터

넷 링크의 법적 문제점, 정보법학 6권 2호, 2002).

프레이밍(framing)의 법적 문제

대부분의 인터넷 웹 사이트들은 한 화면 전체에 문서 하나로 채우지 않고 화면을 2개 내지 4개로 나눠 각각의 화면에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웹 문서 안에 여러 개의 창을 만들어 각각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제작기법을 '프레이밍'이라고 한다. 따라서 프레이밍은 각각 분할된 창에 상이한 하이퍼링크를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뉴화면을 구성하는 상단 또는 좌측 화면을 고정시켜 둔 채로 중앙의 화면(브라우징 프레임)에서 링크된 다른 웹 페이지를 불러올 수 있다.

프레이밍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메뉴 화면을 그대로 둔 채, 브라우징 프레임에 타인의 웹 페이지를 불러오면 마치 그 내용이 자신의 홈페이지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자신의 웹 사이트와 타인의 웹 페이지가 하나의 동일한 주체이거나 후원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시킬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 책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Washington Post 사건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미국 워싱턴포스트 사건(Washington Post Co. vs Total News, Inc.)에서 피고 Total News는 자신의 홈페이지 브라우징 프레임에 저명 신문사, 잡지사 및 TV 뉴스 프로그램 등의 저작물을 링크시켜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하고, 화면의 주변 프레임에는 자신의 로고, 광고 및 URL을 나타나게 했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Total News는 원고들의 기사 등 콘텐츠와 광고를 분리시키고, 대신에 Total News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획득하고 그 만큼 원고의 광고 수익이 감소해 손해를 발생시켰으며, 원고들의 로고나 상표 등이 이용됐으므로 상표권을 침해했고, 피고 자신의 로고와 웹 주소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출처의 혼동과 명성의 손상을 가져오게 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법제코너

해당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양 당사자가 화해함으로써 종료됐고 프레이밍에 대한 법적 판단은 내리지 못했다.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프레이밍 행위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과연 프레이밍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프레이밍과 관련된 저작권 논의는 주로 '동일성유지권'이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침해여부에 관한 것이다.

프레이밍은 일반 링크와 마찬가지로 두 웹사이트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다만 양자는 인터넷 화면상에 나타나는 웹사이트의 모습이 다를 뿐이다. 저작물을 실질적으로 변형하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 프레임만이 추가·삭제된 것으로는 저작물 자체의 동일성을 침해하거나 저작물 자체의 변형을 가져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프레이밍을 악용해 링크된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에는 '성명표시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오승중·이해완, 저작권법, 2005, 301면).

전자지도 사건(서울지방법원 2001.12.7 선고, 2000가합54067호 판결)

원고는 휴대전화를 통한 지도검색이나 자동차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교통상황이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데 활용되는 전자지도의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전자지도를 개발한 원고는 전자지도 검색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피고 N과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전자지도의 광고를 위해 N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전자지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또한 N사에게 검색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1인에게도 전자지도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수여했다. 피고 N사는 원고에게 3,900만원을 지급했다.

피고 N사는 마이맵(mymap)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원고와의 협정에 따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전자지도를 이용한 지도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지도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표시했다.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링크하고자 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다. 사실 모든 웹사이트들이 링크를 원치 않는 것은 아니며, 어떤 웹사이트의 경우는 링크를 장려하고 심지어 링크를 위한 이미지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웹사이트들은 제한된 조건하에서 링크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메인홈 페이지를 제외한 다른 페이지를 직접적으로 링크하는 직접링크만을 금지한다든지, 또는 프레이밍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링크에 대한 허락은 간단한 대화를 통해 얻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N사는 정보통신사업자인 피고 S사와 사이에, 피고 N사의 지도검색 서비스를 S사의 홈페이지의 지도 찾기 코너에 링크시키기로 하는 공동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뒤에 S사의 홈페이지에 피고 N사의 서비스를 프레이밍 링크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원고가 개발·제작한 전자지도는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며, 피고 N사는 S사에게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 일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프레이밍 링크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이 사건이 공급계약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S사의 프레이밍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에 기인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명했다.

인터넷상에서 프레이밍 링크는 정보검색상의 편의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라는 N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당해 프레이밍은 전자지도를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는 경우와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고, 원고가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전자지도를 새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손해를 야기했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프레이밍의 저작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고, S사의 불법행위와 N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다.

불법복제물 사이트에 대한 링크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링크시킬 경우, 저작권법상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지난 2000년 12월 서울지방법원은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와레즈(warez) 사이트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링크시키는 것도 저작권법상 침해며, 간접적인 전송·배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링크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통의 링크와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즉,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 링크라도 실제 저작물을 전송하거나 배포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자신의 홈페이지에 불법복제물 사이트를 링크해 줌으로써 전송권 침해 등을 조장하고 방조했다는 점에서 침해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60조)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링크한 사이트가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동불법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수인이 공동으로 행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 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해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해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이러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전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해 저작권침해중지청구는 할 수 없다고 본다.

한편 2003년 7월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음란물이 게재된 타인의 웹 사이트에 단순히 링크해 놓은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결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 1335 판결). 대법원은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됐다면, 그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2호).



링크소송에 대한 예방

하이퍼링크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Michael Dockins, Internet Link: the Good, the Bad, the Tortious, and a Two-Part Test, 36 U. Tol. L. Rev. 367, 400-4003 (2005)).

첫째,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링크하고자 하는 웹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다. 사실 모든 웹 사이트들이 링크를 원치 않는 것은 아니며 어떤 웹 사이트의 경우는 링크를 장려하고 심지어 링크를 위한 이미지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웹 사이트들은 제한된 조건하에서

링크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메인홈페이지를 제외한 다른 페이지를 직접적으로 링크하는 직접링크만을 금지한다든지, 또는 프레임링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링크에 대한 허락은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웹 운영자는 웹 사이트 사용에 관한 동의서 또는 라이선스 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의 형태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어떤 웹 사이트는 메인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라이선스 계약화면을 자동적으로 생성해 이용자로 하여금 동의의 아이콘에 클릭하도록 하는 클릭-온 동의서(click-on agreement)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웹 사이트는 이러한 클릭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라이선스를 볼 수 있도록 링크만을 생성해 두는 경우도 있다(browserwrap agreement). 법원은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의 효력을 검토하게 된다. 클릭-온 동의서의 경우는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향이다.

또한 영리목적의 웹 운영자들은 링크의 허락에 관한 ‘링크 라이선스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프레임링 또는 Inlining을 사용하고자 하는 웹 사이트 운영자는 링크로 인한 예상치 못한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라이선스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Total News 사례에서 양 당사자는 링크 라이선스 계약서에 따라 프레임링의 사용을 제한하고 그래픽이 생성되지 않는 텍스트만을 링크할 것에 합의했다. 최근 저명한 웹 사이트에 대한 링크는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무형재산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향이다.

셋째, 무단링크를 제한하고자 하는 웹 운영자는 법률적 조치에 앞서 기술적 조치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효과적이다. 단순히 링크를 제한하는 경고 문구를 제시하기 보다는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들도 있다. 또한 패스워드를 사용해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거나 홈페이지는 그대로 둔 채 URL을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